##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74 발의연월일: 2022. 12. 22.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박덕흠

박성민 · 송언석 · 이명수

이종성 · 임병헌 · 정우택

태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12.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	제한 등) ①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	
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	
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	
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신 설>

② ~ ② (생 략)

\_\_\_\_\_

---

- 1. ~ 9. (현행과 같음)
-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기관·단체
-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장 애인활동지원기관
- 12.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 ② ~ ⑫ (현행과 같음)